# 「KB국민ONE적금(정액적립식)」특약



#### 제 1 조 적용범위

"KB국민ONE적금(정액적립식)(이하'이 적금'이라 합니다)"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을 적용합니다.

#### 제 2 조 가입대상

이 적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하며,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# 제 3 조 예금과목 및 계약기간

이 적금의 예금과목은 정기적금으로 하며, 계약기간은 1년, 2년, 3년으로 합니다.

### 제 4 조 저축방법 및 저축한도

이 적금의 저축금은 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내 원단위로 매월 약정한 날짜에 동일한 금액을 저축하여야 합니다.

#### 제 5 조 이율의 적용

- ① 이 적금의 만기이율은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하여 계약기간 동안 적용합니다.
- ② 기본이율은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며, 우대이율은 제6조에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합니다.

# 제 6 조 우대이율

이 적금의 <u>신규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11 개월 동안 고객 본인의 「KB 국민 ONE 통장」에서 아래</u> <u>각 우대이율 적용조건을 충족한 경우 적용</u>합니다.

단, 모든 우대이율은 만기 해지하는 경우에만 <u>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KB 국민은행 홈페이지에</u> 게시된 우대이율을 적용합니다.

구 분	적용조건
급여/가맹점/연금이체	아래 3개 항목 중 하나 이상의 실적이 발생한 월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
	ㅇ 건별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<sup>주1)</sup>
	ㅇ KB국민은행에서 지급한 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<sup>주2)</sup>
	ㅇ 연금수령 <sup>주3)</sup>
KB카드결제	KB국민카드(신용/체크/KB국민비씨 카드 포함)결제실적이 50만원 이상 발생한 월
	수가 3개월 이상인 경우
공과금 이체 <sup>주4)</sup>	각종 공과금 이체(출금) 건수 별로 우대이율 차등 적용
	ㅇ 1건 발생한 월수가 3개월 이상
	ㅇ 2건 발생한 월수가 3개월 이상
	ㅇ 3건 발생한 월수가 3개월 이상
	ㅇ 4건 발생한 월수가 3개월 이상
	ㅇ 5건 이상 발생한 월수가 3개월 이상
대출이자 납부	「KB국민은행의 대출이자 납부」를 위한 연동출금 거래가 3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
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	「KB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 포함)」 납입을 위한 연동출금이 3개월
	이상 발생한 경우



# 주1) 급여이체 실적 인정기준 : 아래 항목 중 하나가 고객의「KB국민ONE통장」에서 발생하는 경우

	- 급여이체 계약(신청)에 의해 KB 국민은행 급여이체 전산(급여성 선일자, 급여성 탑라인,
	기업인터넷뱅킹 등)을 통해 입금되는 건별 50 만원 이상의 입금
KB 국민은행	- 고객이 지정한 일자(전후 1 영업일 포함 3 영업일)에 법인 또는 고유(납세) 번호를
급여이체실적	부여받은 단체가 당행 인터넷뱅킹, 폰뱅킹, 창구거래를 통해 이체하는 건별 50 만원 이상의 입금
	- 고객이 지정한 일자(전후 1 영업일 포함 3 영업일)에 급여성 선일자, 급여성
	탑라인, 국고, 지로, CMS 를 통해 이체되는 건별 50 만원 이상의 입금
다른 은행	- 고객이 지정한 일자(전후 1 영업일 포함 3 영업일)에 다른 은행으로부터
급여이체실적	건별 50 만원 이상의 급여이체

# 주2) 가맹점결제실적 인정기준 : 아래 사항이 고객의 「KB국민ONE통장」에서 발생하는 경우

- KB국민카드(체크카드 및 선불카드 포함) 가맹점대금 및 공동망 가맹점 매입분(KB국민비씨카드 및 다른카드회사 카드 전표를KB국민은행이 매입한 경우) 포함

#### 주3) 연금수령 실적 인정기준 : 아래 항목 중 하나가 고객의 「KB국민ONE통장」에서 발생하는 경우

- 4대연금(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군인연금)공단에서 입금된 금액
- 국가보훈처에서 입금된 금액
- 「KB골든라이프 공사주택연금론」및「KB골든라이프 주택연금론」의 월지급금
- KB국민은행 연금신탁에서 입금되는 연금
- KB국민은행 퇴직연금에서 입금되는 연금
- 「KB골든라이프연금우대예금(KB Hi!Story정기예금 및 KB골든라이프예금 포함)」의 월 균등분할원금(또는 원리금(원금과 이자))

# 주4) 공과금 이체 실적 인정기준 : 아파트관리비, 지로, CMS, 펌뱅킹을 통한 자동납부(카드결제분 제외) 가 고객의 「KB 국민 ONE 통장」에서 발생하는 경우

예시) `15.9.3 이 적금을 신규한 고객의 KB 국민 ONE 통장에서 공과금이체가 아래와 같이 발생한 경우 ㅇ`15.9 월 : 3 건, `15.10 월 : 4 건, `15.11 월 ~ `16.6 월 : 0 건, `16.7 월 : 5 건, `16.8 월 : 5 건

- → 3건 이상 발생 월수가 3개월 이상이므로 해당구간 우대이율 적용 (4건, 5건은 3개월 조건 미충족)
  - \* `16.8월 실적은 "신규일이 속한 달을 포함하여 11개월(`16.7월까지)" 이후에 발생된 실적이므로 인정 불가

부 칙

이 약관은 2015.08.31 부터 시행합니다.

부 칙

이 약관은 2020.10.12 부터 시행하며 신규가입고객에 한하여 적용합니다.

본 특약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.